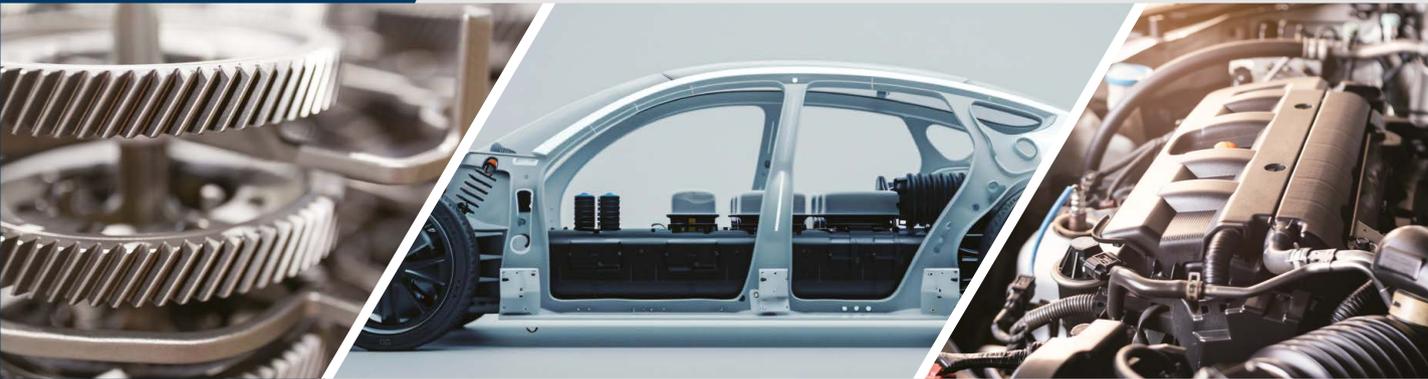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쟁점과 사례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2편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쟁점과 사례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2편 자동차 부품



서문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한-미 FTA를 기반으로 조성된 대미 통상환경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2일 미국은 국가별로 11%에서 50%까지 각각 다른 상호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이 발표하는 상호관세를 포함한 모든 추가 관세는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수출기업에게 생소한 「**비특혜 원산지**」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세율이 부과되는 외국의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고세율 국가로 판정된다면 기업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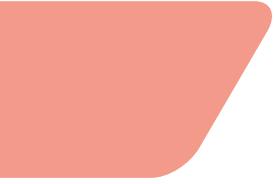
비특혜원산지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대미 수출전략의 핵심입니다.

이 책자는 대미 수출기업의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판정사례를 정리한 실전형 안내서입니다.

원산지 관리를 위한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박현



I. 미국 관세정책 현황 및 비특혜원산지 기준

01. 미국 관세정책 현황	09
02. 자동차 부품 관세	10
03. 미국의 원산지 기준	12
04. 자동차 부품 관세 로드맵 : 자동차 부품 관세 한눈에 보기	13
05. 미국의 사전심사제도	14

II.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

Case 01. 자동차 전면유리 세정 펌프	18
Case 02. 차량용 LED 램프	21
Case 03. 전기차 모터용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	25
Case 04. 자동차 에어컨용 증발기 어셈블리	27
Case 05. 자동차용 센터 스택 어셈블리	30
Case 06.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	32
Case 07. 전기차 충전 케이블	35
Case 08. 이중 플랜지 휠 허브 어셈블리	37
Case 09.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	39
Case 10. 자동차용 전면유리	41
Case 11. 자동차용 PVC 바닥 매트	44
Case 12. 자동차 시트 커버	46
Case 13. 연료 분사기 어셈블리	48

부 록

CBP 사전심사제도 신청 방법	52
CBP 사전심사 사례 조회 방법	55



I. 미국 관세정책 현황 및 비특혜원산지 기준

01. 미국 관세정책 현황	09
02. 자동차 부품 관세	10
03. 미국의 원산지 기준	12
04. 자동차 부품 관세 로드맵 : 자동차 부품 관세 한눈에 보기	13
05. 미국의 사전심사제도	14

이 미국 관세정책 현황

현황

-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대규모 관세 조치를 연이어 시행 중임.

특히, 4월 2일부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증가세를 부과하고(4.5 시행), 57개국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이한 추가 관세(상호관세)*** 발표

* 우리나라 25%, 중국 125%, EU 20%, 일본 24%, 베트남 46%, 대만 32% 등이며,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국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시행 유예(기본세율 10%만 시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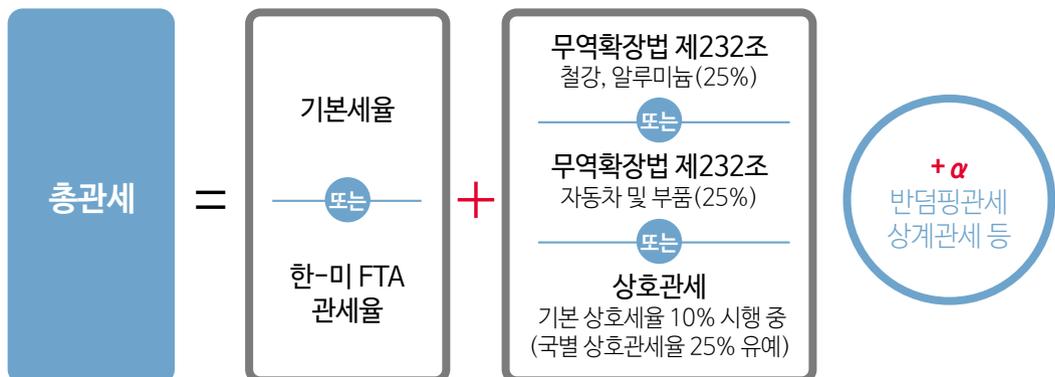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 주요 현황

- ① (03.12)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추가 25% 관세 시행(무역확장법 제232조)
- ② (03.26) 자동차 추가 25% 관세 시행(무역확장법 제232조)
- ③ (04.05) 기본 상호관세 10% 시행(국제비상경제권한법)
- ④ (04.09)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 우리나라 25% (국제비상경제권한법) ● 90일 유예 발표
- ⑤ (05.03) 특정 자동차 부품 추가 25% 관세 시행(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부과 체계

- 기본 또는 한-미 FTA 세율에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관세 또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등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이 더해지는 구조

〈한국산 물품의 미국 수출 시 적용되는 관세율〉



02 자동차 부품 관세



Check Point

- ✓ 미국의 관세부와 내용은 미국의 품목번호(HTSUS)로 발표됨
- ✓ 품목번호는 세계관세기구(WCO) 기준에 따라 6단위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7단위 이하는 각 국이 달리 운영함
- ✓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관세청이 발표하는 연계표를 참고하여 부과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가. 보편관세(무역확장법 제232조)

추가 25%

- **대상**: 미국 품목번호(HTSUS*) 4~10단위 기준 130개 품목 공개

*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세부 대상은 CBP CSMS #664916652(링크 하단 pdf참고)에서 확인

▶ http://content.govdelivery.com/bulletins/gd/USDHSCBP-3de8cac?wgt_ref=USDHSCBP_WIDGET_2

나. 상호관세(국제비상경제권한법)

추가 10%('25.5.10 기준)

- **대상**: 모든 물품

- **제외대상**:

- 1) 50 U.S.C 1702(b)에 따라 인도적 목적 등으로 수입이 보장되는 필수 소비재나 의약품 등
- 2)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적용을 받는 물품
 -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
 -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
- 3) 부속서2에 열거된 품목(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제품, 특정 주요 광물 등, HTSUS 공개)
- 4) 미국 관세율표(HTSUS)의 제2열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는 교역 상대국의 모든 물품(예: 북한, 쿠바 등)
- 5) 향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
- 6) 품목 가치 중 최소 20% 이상이 미국산인 경우, 그 미국산 함량
- 7) 4.11 추가 발표한 반도체 제조 장비, 스마트폰, 노트북 등(HTSUS 20개 품목 공개)

〈(예시) 자동차 부품 관세부과 시 미국 수입 세율 비교〉

구분	MFN	제301조	대중국 추가관세		자동차 부품 관세	상호관세	최종관세
			'25.2	'25.3	'25.5		
한국 수출 시 (FTA 체결국)	0%	-	-	-	25%	자동차 부품 제외	25%
중국 수출 시 (FTA 미체결국)	0~9%	7.5~25%	10%	10%	25%	자동차 부품 제외	52.5~79%

참고 사항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특정 자동차 부품 중 15개 품목*(미국 품목번호(HTSUS) 기준)은 철강 또는 알루미늄 파생제품으로도 분류되어 제232조 관세 부과 대상
- Ⓞ 동 품목에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25%)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제232조 관세(25%)만 부과됩니다.

* 7320.10.3000, 7320.10.6015, 7320.10.6060, 7320.10.9015, 7320.10.9060,
7320.20.1000, 8302.10.3000, 8302.30.3010, 8302.20.3060, 8708.10.3050,
8708.10.6010, 8708.10.6050, 8708.29.5160, 8708.80.6590, 8708.99.6890

03 미국의 원산지 기준

Check Point

- ✓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관세부과
- ✓ 원산지에 따라 세율 차이가 발생하며, 원산지는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판단함

가. 미국의 원산지 기준

- **한-미 FTA** : FTA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일반 원산지(비특혜원산지) 판단기준** : 둘 이상의 국가에서 상품 또는 재료를 생산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

관련 규정 : 미 연방규정 19 CFR 134

“원산지 국가”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산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말한다. 다른 나라에서 물품에 더해지는 추가 가공이나 추가 물질은 그러한 다른 국가에 이 장에서 의미하는 “원산지 국가”를 부여하기 위해 반드시 **실질적 변형**을 가져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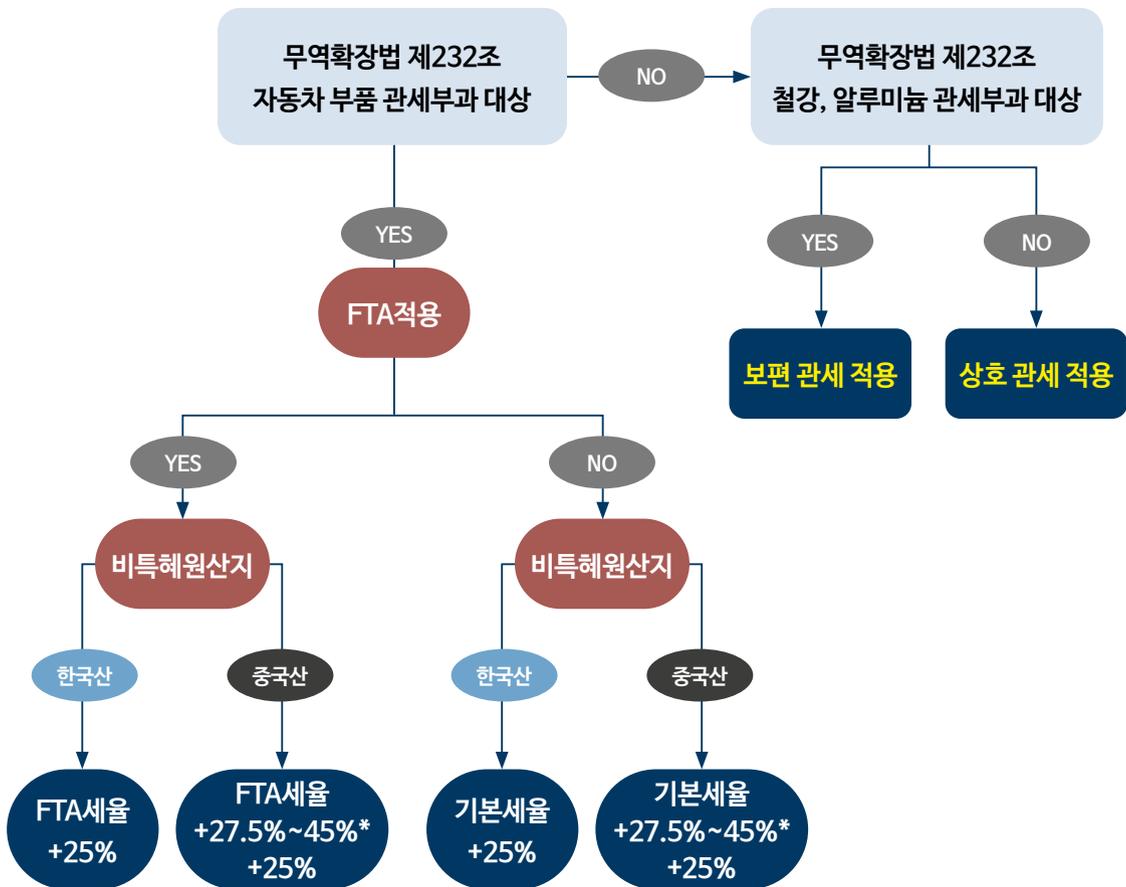
나.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

-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는 경우 ‘원산지’로 판단**
- **미 CBP*가 개별 사례에 대해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우리나라 관세청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기능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관세부과 및 징수 실무 담당

04 자동차 부품 관계 로드맵: 자동차 부품 관계 한눈에 보기

Check Point

- ☑ 품목번호에 따라 부과 세율 차이 발생
- ☑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른 원산지에 의해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



* 무역법 제301조 보복관세(7.5%~25%)+IEEPA(20%)
 ※ 對中 추가 관세는 미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미국의 사전심사제도

Check Point

- ✓ CBP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수입 전 통관 리스크를 예방하고, CBP의 법적 구속력 있는 해석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CBP 사전심사제도 (CBP Advance Ruling, 19 CFR 177)

수입 전 품목분류, 원산지, FTA적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미국의 사전판정제도

- **신청** : 본부(Headquarters) 또는 뉴욕 소재 품목분류 전문부서(NCSD*)

* 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

일반적으로 관세평가(Valuation), 운송(Carrier) 등 주로 결정이 복잡한 판정은 본부(HQ)에서, 품목분류(Classification) 등 결정이 간단한 경우의 판정은 뉴욕(NY)에서 처리함

- **신청방법** : 서면 또는 온라인
- **신청인** : 수입자, 수출자, 해당 판정 요청 사안의 이해관계자, 대리인
- **결정유형** : ① 품목분류, ② 원산지 표시, ③ 원산지, ④ FTA적용
- **답변기한** : 30일(일반적일 경우)

II.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

Case 01. 자동차 전면유리 세정 펌프	18
Case 02. 차량용 LED 램프	21
Case 03. 전기차 모터용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	25
Case 04. 자동차 에어컨용 증발기 어셈블리	27
Case 05. 자동차용 센터 스택 어셈블리	30
Case 06.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	32
Case 07. 전기차 충전 케이블	35
Case 08. 이중 플랜지 휠 허브 어셈블리	37
Case 09.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	39
Case 10. 자동차용 전면유리	41
Case 11. 자동차용 PVC 바닥 매트	44
Case 12. 자동차 시트 커버	46
Case 13. 연료 분사기 어셈블리	48

※ 이 사례는 CBP에서 공개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적 효력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CBP 사전판정 사례 LIST

Case	판정번호	날 짜	사 례 명
01	HQ H303866	2020.02.13.	[자동차 전면유리 세정 펌프]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02	HQ H304910	2020.04.21.	[차량용 LED 램프]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03	HQ H313371	2021.03.30.	[전기차 모터용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04	HQ H319601	2021.07.16.	[자동차 에어컨용 증발기 어셈블리]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05	NY N325562	2022.05.05.	[자동차용 센터 스택 어셈블리]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06	NY N336183	2023.11.22.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 원산지 표시,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07	NY N337769	2024.02.02.	[전기차 충전 케이블] 원산지 표시,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08	NY N340514	2024.07.03.	[이중 플랜지 휠 허브 어셈블리] 원산지 표시,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09	NY N343543	2024.10.31.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 원산지 표시
10	NY N343290	2024.11.04.	[자동차용 전면유리] 원산지 표시,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11	NY N344712	2025.01.13.	[자동차용 PVC 바닥 매트] 원산지 표시
12	NY N345401	2025.02.20.	[자동차 시트 커버] 실질적 변형에 따른 원산지 판정
13	NY N346250	2025.03.13.	[연료 분사기 어셈블리] 실질적 변형에 따른 원산지 판정

※ 이 사례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한 특정 자동차 부품과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부품을 모두 포함합니다.

Case 01. 자동차 전면유리 세정 펌프

사 례 명

- [자동차 전면유리 세정 펌프]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HQ H303866(2020.02.13.)

사 실 관 계

요청자	미공개(대리인 : Rock Trade Law LLC)	
제 품	제 품 명	자동차 전면유리 세정 펌프(부품번호 1999-1WP0055EP)
	구 성	멕시코산(약 50%), 중국산(약 30%), 일본/미국 등 기타(나머지)
	용 도	자동차 전면유리 세정 시스템용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8413.70.20
제조 공정	<p>[상세 공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터 하우징 생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산 강판을 절단, 천공, 드로잉 가공하여 최종 모터 하우징 형태로 성형 2. 하우징에 중국산 부상, 페라이트 바, 스프링 삽입 및 고정 3. 하우징 내 이물질 제거 및 자화기를 통한 페라이트 바 자화 •로터 생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산 강판을 절단 및 천공하여 라미네이션 시트 제작 2. 중국산 샤프트 표면 가공 3. 라미네이션 시트 적층 후 샤프트를 적층된 라미네이션 중앙에 삽입 4. 에폭시 코팅 및 경화를 통한 절연 처리 5. 중국산 정류자 장착 및 에폭시 접착 후 경화 6. 멕시코산 절연 구리 와이어로 적층 라미네이션 감기 및 정류자와 연결 7. 테스트 및 밸런싱 조정 8. 정류자 표면 가공 9. 세척 및 중국산 슬링거, 와셔 장착 10. 최종 테스트 	

제조
공정

- 모터 엔드캡 생산
 1. 열가소성 수지 사출 성형하여 플라스틱 엔드캡 제작
 2. 중국산 부품(브러시, 리프 스프링, 단자 등) 조립 및 납땜
 3. 이물질 제거 및 테스트
- 모터 최종 조립
 1. 위 세 가지 서브 어셈블리를 정렬·삽입하여 모터 완성
 2. 성능, 시각, 작동 테스트 수행
- 펌프 조립
 1. 중국산, 일본산 수지를 사용하여 펌프 하우징, 커넥터, 임펠러 사출 성형
 2. 모터와 펌프 부품 결합 조립
 3. 최종 성능 및 누수 테스트, 시각검사 및 라벨링 후 완제품 완성

쟁점사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1 (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라 중국산 특정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제301조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을 사용
 - 실질적 변형의 요건 : 물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수행된 공정의 정도와 원재료가 기존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구성요소로 완전히 통합되었는지 여부이며, 이러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며, 사안별(case-by-case)로 이루어짐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개별 부품이나 재료가 조립을 통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거쳤는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행된 작업(operation)의 범위와 복잡성 및 해당 부품들이 기존의 정체성(identity)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본질적이고 통합된 구성요소(integral part)가 되었는지 여부임

참고 판례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573 F. Supp. 1149 (Ct. Int'l Trade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 경미하거나 간단한 조립 작업은 복잡하고 의미 있는 조립 작업과 달리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이때 판단에 고려되는 요소로는 작업의 성격(조립 부품의 수 포함), 작업 단계의 복잡성, 조립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필요한 숙련도, 작업의 정밀성, 품질 관리 수준 등이 있음

참고 판정 : C.S.D. 80-111, C.S.D. 85-25, C.S.D. 89-110, C.S.D. 89-118, C.S.D. 90-51, C.S.D. 90-97

- 만약 제조 또는 조립 과정이 경미하여 해당 물품의 기존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참고 판례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1982), *aff'd* 702 F. 2d 1022 (Fed. Cir. 1983)

- CBP는 해당 사례에서 실질적 변형의 판단을 위해 HQ H282391 (2017.03.16.) 및 HQ H303529 (2019.06.06.) 사례를 인용

참고 판정 : HQ H282391 (2017.03.16.)

- 기어 모터는 기어 박스와 모터라는 두 개의 하위 조립품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어 모터를 조립하기 위한 총 200개 이상의 부품 중 서로 다른 131개의 부품을 결합하는 작업이 수행됨
- 개별 부품은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되었으며, CBP는 해당 조립이 최소 27단계의 공정을 필요로 하고 약 2시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또한 작업자가 조립을 위해 추가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CBP는 외국에서 수입된 개별 부품들이 원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인 기어 모터의 필수적이고 통합된 부분으로 변화하였으며, 조립 공정 결과 명칭, 성질, 용도 면에서 새로운 물품으로 전환되었다고 봄

참고 판정 : HQ H303529 (2019.06.06.)

- 미완성 우편 요금기의 생산을 위한 주요 하위 조립품 중 하나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조, 나머지 하위 조립품은 중국에서 제조함
- 최종적으로 하위 조립품들을 연결 및 완성하는 공정은 중국에서 수행됨
- CBP는 중국에서 이루어진 조립 과정이 부품들을 중국산 물품으로 전환하기에 충분히 광범위하고 복잡한 것으로 판단

- **(판정 결과)** 전체 부품의 절반가량이 외국산이긴 하나, 멕시코에서의 제조 공정은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이 포함된 복합 공정이며, 이를 통해 원재료가 개별 정체성을 상실하고 완전히 새로운 펌프로 제조되었으므로 멕시코 내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다고 판정

결론

-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세정 펌프의 원산지는 멕시코임
- HTSUS 기준 8413.70.20에 해당하여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품목이나,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가 멕시코로 판정되어 무역법 제301조 추가 관세는 적용되지 않음

Case 02. 차량용 LED 램프

사 례 명

- [차량용 LED 램프]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호

- HQ H304910(2020.04.21.)

사 실 관 계

요청자	Grakon LLC(대리인 : Heather Jacobson)	
제 품	제 품 명	차량용 LED 램프(부품번호 2082-003, 4289-001, 2000-007)
	구 성	• LED : 일본산 또는 미국산 • 기타 부품 : 중국산 다수 • PCBA : 멕시코에서 SMT 또는 웨이브 솔더링 방식으로 제조
	용 도	차량용 LED 램프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8512.20.2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LED를 포함한 다양한 부품으로 PCBA를 멕시코에서 제조(SMT(Surface Mount Technology, 표면 실장 기술) 또는 웨이브 솔더링*) * 웨이브 솔더링 : 부품 리드를 PCB에 끼워 넣고 솔더 웨이브 기계를 통해 전체 패널에 납을 흘려 보내는 방식 2. 중국으로 운송하여 플라스틱 렌즈, 하우징 등 부품과 함께 최종 조립 3. 조립 시 나사 및 커넥터를 사용하며, 일부 납땜 또는 에폭시 포팅 실시 4. 검사 및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쟁 점 사 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1 (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핵심 판단 요소: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복잡성과 기술 수준, 부품이 원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핵심 구성 요소로 기능하는지 여부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1982)

-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이 결합되어 완제품이 생산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 여부는 사안별(case-by-case)로 판단되며, CBP는 전체 정황(totality of the evidence)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주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으며, 어느 하나의 요소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음

- 1) 구성 부품의 원산지
 - 2) 해당 국가 내에서 수행된 가공의 정도
 - 3) 해당 가공을 통해 새로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탄생했는지 여부
- ※ 이 외에도 다음 요소들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음
- 제품 설계 및 개발에 투입된 자원
 - 조립 이후 수행되는 검사 및 시험 절차의 범위와 성격
 - 실제 제조 과정에서 요구되는 작업자의 숙련도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명칭(name)의 변화 없음: 수입된 각 부품은 완성된 공구에서도 동일한 명칭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명칭의 변화가 없다고 봄
- 성질(character)의 변화 없음: 해당 부품들은 대만에서 열간 단조(hot-forging) 또는 냉간 성형(cold-forming)을 통해 최종 형상으로 제조되었으며, 이후 미국에서 열처리, 전기 도금, 조립이 이루어졌지만 그 본질적 성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
- 용도(use)의 선(先)결정: 수입 시점에서 각 부품은 특정 수공구에 조립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용도 또한 이미 정해져 있었으며, 이는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없다고 봄(단, 하나의 예외 사례는 제외)
- 부가가치 주장 기각: 원고가 주장한 “미국 내에서의 부가가치가 대만에서의 작업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그러한 논리가 동일한 공정을 수행하더라도 판매 가격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기각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2016)

- 법원은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 기준을 검토하였고, Uniroyal, Inc., 3 C.I.T. 226 판례를 인용하여, “수입 후의 공정이 단순 조립에 불과한 경우, 특히 수입된 부품이 물리적 변화를 겪지 않는 경우에는 성질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 또한, 법원은 “최종 용도가 수입 시점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용도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해 왔다”고 지적하였으며, 그 사례로 National Hand Tool Corp. 사건을 인용함

- 해당 사건은 쟁점을 “수입된 부품들이 완제품인 Generation II 손전등으로 조립된 후에도 각각의 명칭을 유지하는지 여부”로 보았고, “Generation II 손전등을 구성하는 부품들은 수입 후 조립 공정으로 인해 각각의 명칭을 잃지 않으며, 수입시점에 이미 Generation II 손전등의 부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으며, 조립 이후에도 용도(use)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마지막으로, 해당 조립 공정이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킬 정도로 복잡하다고 보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Generation II 손전등을 구성하는 수입 부품들이 조립을 통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 중 어느 것도 변경되지 않았다고 판시함

- 조립 또는 가공을 통해 물품의 정체성이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물품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 역시 고려함

참고 판례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5

- 미국 내에서 외부 밑창(outsole)에 부착된 수입산 신발 갑피(shoe uppers)가 완성된 신발의 본질적인 요소(very essence of the finished shoe)라고 보았으며, 따라서 제품의 성질(character)이 변하지 않았고 미국 내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시

참고 판례 :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10 C.I.T. 48, 61, 628 F. Supp. 978, 991 (1986)

- 수입된 오렌지 농축액(orange juice concentrate)이 완제품 오렌지 주스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다(imparts the essential character)고 보았으며, 따라서 이는 미국산 제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

- CBP는 제품의 원산지를 판단함에 있어 광원(light source)의 원산지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017620*

- 다양한 수입 부품(개별 부품 및 하위 조립체)이 미국 내에서 수행된 작업에 의해 렌즈 헤드 하위 조립체(lens head subassembly) 및 완성된 손전등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다고 판단
- 미국산 LED가 손전등의 주요 광원을 생성함으로써 렌즈 헤드 하위조립체 및 손전등 전체에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부여한다고 언급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215657*

- LED를 손전등의 ‘가장 중요한 부품(most important component)’으로 언급

- 한편, CBP는 부품을 인쇄회로기판(PCBA)에 제조·조립하는 과정도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도 존재

참고 판정 : *Customs Service Decision (C.S.D.) 85-25, 『Customs Bulletin』 제19호 844쪽(1985)*

-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단에 있어, 다수의 가공된 부품을 인쇄회로기판(PCB)에 조립하는 과정이 상당한 시간과 숙련도를 요구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다고 판시
- 해당 사례에서는 저항기, 커패시터, 다이오드, 집적회로, 소켓, 커넥터 등 50개 이상의 개별 부품이 PCB에 조립됨
- CBP는 이 PCBA 조립 과정이 매우 많은 수의 부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작업 공정이 포함되며, 상당한 시간과 숙련도가 필요하고, 세심한 주의 및 품질 관리가 요구되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114395

- CBP는 미국 정부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목적상 디지털 광처리(DLP) 프로젝트의 원산지를 PCBA 메인보드 및 광원이 조립된 국가로 판단함
- 해당 프로젝트는 모바일 기기의 사진과 영상을 표면에 투사하기 위한 광원으로 대만산 LED를 사용함
- 시나리오 1 : 광학 엔진과 PCBA 메인보드 (중국 조립) → 최종 조립 (대만)
- 시나리오 2 : 광학 엔진과 PCBA 메인보드 (대만 조립) → 최종 조립 (대만)
 - * 두 시나리오 모두 일본, 중국, 한국, 태국, 대만 및 미국에서 공급된 부품이 광학 엔진(light engine)과 PCBA 메인보드로 조립됨
- CBP는 광학 엔진과 PCBA 메인보드가 프로젝트의 본질적 요소(essence)이며, 이들의 생산이 최종 실질적 변형(last substantial transformation)에 해당한다고 판단
- 따라서 광학 엔진 모듈과 PCBA 메인보드 모듈이 조립되고 프로그래밍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원산지는 시나리오 1 (중국), 시나리오 2 (대만)

- CBP는 SMT 및 웨이브 솔더링 공정이 다수의 개별 부품을 PCB에 조립하는 것으로, 충분히 복잡하고 의미 있는 공정(complex and meaningful)으로 보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해당 PCBA가 조립된 국가를 제품의 원산지로 간주함
- 이 경우, LED 또한 PCBA에 조립되는 개별 부품 중 하나이므로, 멕시코에서 이루어진 조립 작업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공정에 해당된다고 봄
- **(판정 결과)** 중국에서 수행되는 조립 공정은 나사 체결, 커넥터 연결, 일부 납땜 등에 국한되어 있어 공정의 복잡성이 부족하므로, 해당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차량용 LED 램프의 원산지는 멕시코로 판정

결론

- 멕시코에서 수행된 SMT 및 웨이브 솔더링 기반의 PCBA 조립은 높은 복잡성과 기능적 통합성을 수반하므로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됨
- 이에 따라 최종 LED 차량용 램프의 원산지는 멕시코로 간주되며, 중국산으로 분류되지 않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Case 03. 전기차 모터용 로터 - 스테이터 어셈블리

사 례 명

- [전기차 모터용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HQ H313371 (2021.03.30.)

사 실 관 계

요청자	LG Electronics, Inc.	
제 품	제 품 명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 (Rotor-Stator Assemblies for EV motors)
	구 성	• 다양한 국가에서 조달된 부품으로 구성 • 핵심 부품은 스테이터 코어와 로터 코어
	용 도	전기차 모터에 사용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8413.70.2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 네 가지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의 원산지 판정 요청 • 여러 부품이 중국, 멕시코 또는 한국으로 수입되어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로 조립됨 • 다만, 사례에서 구체적인 시나리오 및 제조 공정 미공개	

쟁 점 사 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1 (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라 중국산 특정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제301조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을 사용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경미하거나 간단한 조립 작업은 복잡하고 의미 있는 조립 작업과 달리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이때 판단에 고려되는 요소로는 작업의 성격(조립 부품의 수 포함), 작업 단계의 복잡성, 조립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필요한 숙련도, 작업의 정밀성, 품질 관리 수준 등이 있음

참고 판정 : *C.S.D. 80-111, 85-25, 89-110, 89-118, 90-51, 90-97*

- CBP는 해당 사례에서 실질적 변형의 판단을 위해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판례 및 CBP 기준 판정 사례를 인용

참고 판례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재료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 수입된 구성 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참고 판정 : *NYN308827, NYN316151, NYN305251*

- **(판정 결과)** 사례에서 최종 물품 생산을 위해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다양한 주요 부품들이 사용되기는 하나,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성품은 스테이터 코어와 로터 코어로 판단됨
 -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조립 과정 자체는 단순히 부품을 삽입하고 부착하는 것 이상의 작업이라고 판단되나,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의 원산지는 스테이터 코어와 로터 코어가 생산되는 국가에 따라 결정됨

결론

-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의 주요 부품으로 판단되는 스테이터 코어와 로터 코어가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며, 중국산으로 판정되는 경우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함

Case 04. 자동차 에어컨용 증발기 어셈블리

사 례 명

- [자동차 에어컨용 증발기 어셈블리]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호

- HQ H319601(2021.07.16.)

사 실 관 계

요청자	Valeo North America(대리인 : Crowell & Moring, LLP)	
제 품	제 품 명	자동차 에어컨용 무브러시(brushless) 모터 증발기 어셈블리
	구 성	로터(rotor), 스테이터(stator), 임펠러, PWB 어셈블리, 커버 등
	용 도	자동차의 공조기(HVAC)에 장착되어 공기 순환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8414.59.65
제 조 공정	[상세 공정] • 공통 : 스테이터/로터 코어 → 조립된 스테이터/로터 → 최종 모터 어셈블리 • 시나리오 1 : 코어는 베트남산 → 중국에서 어셈블리 → 멕시코 최종 조립 • 시나리오 2 : 일본산 코어 → 중국 → 멕시코 • 시나리오 3 : 한국산 코어 → 중국 → 멕시코 • 시나리오 4 : 태국산 코어 → 중국 → 멕시코 • 시나리오 5 : 베트남산 코어 → 중국에서 전 공정(스테이터/로터 조립 및 최종 조립까지 수행)	

쟁 점 사 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1 (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라 부과되는 25%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는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1982)

- 핵심 판단 요소 :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복잡성, 기술 수준, 부품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 부품으로서 기능하는지 여부

참고 판례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573 F. Supp. 1149(Ct. Int'l Trade 1983), *aff'd*, 741 F.2d 1368(Fed. Cir. 1984)

- 조립 작업이 단순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판단 요소로는 조립 부품의 수 및 종류, 수행 작업 단계의 수, 작업 소요 시간, 기술, 정밀도, 품질 관리 정도 등의 사항이 있음

참고 판정 : *C.S.D. 80-111*, *C.S.D. 85-25*, *C.S.D. 89-110*, *C.S.D. 89-118*, *C.S.D. 90-51*, *C.S.D. 90-97*

- 만약,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사소한 수준이며,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본질에 변화가 없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참고 판례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참고 판례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2016)

- 법원은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 기준을 검토
- 수입 후 공정이 조립에 불과한 경우, 특히 물리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성질(character)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음
- 수입 시점에서 최종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도(use)의 변화가 없다고 봄
- 조립 공정의 성격 또한 고려(조립이 단순한 수준인지, 아니면 복잡하여 개별 부품이 독립된 정체성을 잃고 새로운 물품의 구성 요소로 전환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4126

- 대부분의 중국산 개별 부품이 세르비아로 운송된 후, 로터 및 스테이터 서브어셈블리로 제조되고 이를 결합하여 식기세척기용 펌프로 완성
- 이에 따라 세르비아에서 수행된 모터의 제조 및 조립 공정을 근거로 원산지를 세르비아로 판정

참고 판정 : CBP Ruling NY N305251

- 스테이터와 로터는 일본에서 제조되었으며, 코일 형태의 강판을 절단·프레스하여 적층물(stacks)로 가공
- 풀리, 베어링, 샤프트, 엔드캡 등 기타 부품은 중국산이며, 이들을 결합해 기능이 완비된 모터로 조립하는 작업은 중국에서 수행
- 조립 공정에는 스테이터·로터 가공, 도장, 권선, 샤프트·베어링 결합, 납땜, 하우징 체결 등이 포함됨
- CBP는 스테이터와 로터가 모터의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며, 조립 과정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따라서 조립 공정이 충분히 복잡하지 않다고 보아, 스테이터와 로터가 제조된 일본을 최종 원산지로 판정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3529

- 주요 하위 조립품 중 일부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작되었으나, 대부분은 중국산이며 최종 조립도 중국에서 이루어짐
- CBP는 중국 내 조립 공정이 충분히 복잡하고 포괄적이어서 구성 부품에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판단
- 또한, 조립 공정의 복잡성 여부는 단순한 부품 연결 여부가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수행된 전체 공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참고 판정 : CBP Ruling NY N309707

- 대부분 중국산 부품(스테이터 코어, 마그넷 와이어, 절연 시트, 하우징, 샤프트 등)을 사용하였으며, 최종 조립은 멕시코에서 이루어짐
- 멕시코에서는 스테이터 권선 및 납땜, 로터 자석 부착 및 자화 처리, 임펠러 및 상단 하우징 장착 등 복잡하고 다양한 조립·제조 공정 수행
- CBP는 이러한 공정을 통해 기존 부품들이 개별 정체성을 상실하고, 공기 순환 기능을 갖춘 신규 상업적 물품인 팬 블로어 어셈블리로 탈바꿈했다고 판단하여, 원산지는 멕시코로 결정
→ 모터 관련 원산지 판정에서 스테이터 및 로터 코어 이후의 가공 수준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

- CBP는 팬 또는 펌프 구성품을 모터에 프레스 장착, 연결하는 단순 조립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전동 모터의 원산지를 스테이터와 로터라는 핵심 부품(essence)의 코어(core)가 제조된 국가로 원산지를 판단함
- 또한, 모터 관련 판단에서는 스테이터와 로터의 코어(core)가 제조된 이후의 가공 정도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판정 결과)

- (시나리오 1~4) 핵심부품(스테이터/로터)이 각각 베트남, 일본, 한국, 태국에서 제조되었으며, 이후 중국에서는 단순 조립만 수행되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산지는 각각 베트남, 일본, 한국, 태국으로 판단
- (시나리오 5) 핵심부품(스테이터/로터)의 코어(core)는 베트남산이나, 해당 부품들이 중국에서 최종 가공되어 자동차 에어컨용 증발기의 형태와 기능을 갖추게 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국가는 중국이며, 이에 따라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단

결론

- 시나리오 1~4 : 원산지는 각각 베트남, 일본, 한국, 태국이며,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 시나리오 5 : 원산지는 중국이며,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임

Case 05. 자동차용 센터 스택 어셈블리

사 례 명

- [자동차용 센터 스택 어셈블리]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호

- NY N325562(2022.05.05.)

사 실 관 계

요청자	Tianma America, Inc. (대리인 : Miller, Canfield, Paddock and Stone, PLC)	
제 품	제 품 명	자동차용 통합 센터 스택 어셈블리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BA(말레이시아) : 마이크로컨트롤러 유닛, LED 드라이버 등 장착된 SMT(Surface Mount Technology, 표면 실장 기술) 기반 기판• BLU 서브 어셈블리(일본) : LED 바, 도광판, 필름이 하우징 내에 구성된 조명 부품• LCD 유리 패널(중국) : TFT 배열, 컬러 필터, 액정 층이 포함된 LCD 디스플레이 구조• 외관 플라스틱 및 부속품 (여러 국가) : 커버, 노브, 나사 등
	용 도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 공조 제어 등 다양한 기능을 제어하는 인터페이스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반자동화 방식으로 네 개의 부품을 일본에서 조립 2. 조립 후 소프트웨어 장착 및 기능 검사 후 미국 수출	

쟁 점 사 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19 C.F.R. §134.1 (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나 재료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발생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1940)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참고 판례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1908)
참고 판례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1982)

- Energizer Battery 사건에서 법원은 수입 후 공정이 조립(assembly)에 불과할 경우, 성질(character)의 변화가 있다고 보지 않았으며, 수입 당시 최종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경우 용도(use)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지 않음

참고 판례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2016)

- 법원은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 기준을 검토
- 수입 후 공정이 조립에 불과한 경우, 특히 물리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성질(character)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음
- 수입 시점에서 최종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도(use)의 변화가 없다고 봄
- 조립 공정의 성격 또한 고려(조립이 단순한 수준인지, 아니면 복잡하여 개별 부품이 독립된 정체성을 잃고 새로운 물품의 구성 요소로 전환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

참고 판례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226, 542 F. Supp. 1026, 1031, *aff'd*, 702 F.2d 1022(Fed. Cir. 1983)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310,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판정 결과)**
 -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PCBA는 완성품의 핵심 기능 구성요소로, 복잡한 SMT 공정을 통해 제조됨
 - 이후 일본에서 일부 기능이 추가되지만, 이는 PCBA의 본질적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으며, 완성품의 주요 기능은 대부분 PCBA에 의해 결정, 또한 해당 부품의 용도는 조립 이전부터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결론

- 일본에서의 조립은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자동차용 센터 스탭 어셈블리의 최종 원산지는 말레이시아로 판정되며, 이에 따라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Case 06.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

사 례 명

-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 원산지 표시,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호

- NY N336183(2023.11.22.)

사 실 관 계

요청자	Grupo Antolin Silao, S.A. de C.V. (대리인 : Victor Gonzalez LLC)	
제 품	제 품 명	Load Floor Trunk Automotive V & C 167 load floor HL
	구 성	• 하판(substrate) : 중국(T-너트 포함) • 패브릭 : 네덜란드 • 접착제, 나사, 브래킷, 라벨 : 미국 • 클립 : 캐나다
	용 도	자동차의 트렁크 하단에 위치하는 적재면 보강 패널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8708.29.516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구성 부품 모두 멕시코로 수입되어 최종적으로 조립 주요 작업 : 하판에 패브릭 접착 및 적층(laminating), 클립, 나사 등 조립됨	

쟁 점 사 항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①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19 C.F.R. §134.1 (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나 재료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발생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단, NAFTA 또는 USMCA 물품에 대해서는 『19 C.F.R. §102』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원산지 표시 규정이 적용됨
 - 『19 C.F.R. §102.11 (a)』에 따르면,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에 따름
 - 1)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그 국가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 2)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자국산 재료만으로 생산된 경우
 - 3) 해당 물품에 포함된 모든 외국산 재료가 『19 C.F.R. §102.20』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하고, 모든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해당 물품은 위의 1), 2)항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3)항을 적용해야 하며, 완제품의 HTSUS 8708.29의 세번변경기준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제8708.95호 제외)’임(즉, 6단위 세번변경기준)
 - 원재료인 중국산 하판(substrate)은 완제품과 동일한 HTSUS 8708.29에 해당하므로, 세번변경 기준을 불충족함
 - 『19 C.F.R. §102.11 (b)』는 품목분류 상 세트로 명시되어있거나, 통칙 제3호에 따라 세트로 분류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본 조항 (a)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제품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부여한 부품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한다고 규정함 → 하판(substrate)
- **(판정 결과)** 해당 제품은 관련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주요 구성요소인 하판(substrate)이 중국산이므로, 원산지 표시 목적상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단됨

②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1 (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1940)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참고 판례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1908)

참고 판례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1982)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 (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참고 판례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1982), *aff'd*, 702 F.2d 1022(Fed. Cir. 1983) (*Uniroyal*)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totality of the evidence) 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W968434*

참고 판례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1 CIT 470, 478, 664 F. Supp. 535, 541 (1987)

● (판정 결과)

- 멕시코에서 수행된 공정은 패브릭을 하판 (substrate) 과 접착 또는 접합 후 적층 (laminating) 하고, 나사, 클립, 브래킷, 라벨을 부착하여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제조 공정만으로는 개별 부품들을 명칭 (name), 성질 (character), 용도 (use) 가 변화된 새로운 상업적 물품 (article of commerce) 으로 실질적으로 변형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 완성된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의 본질적 특성은 하판 (substrate) 에 의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단되어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함

결론

- 원산지 표시 목적상, 관련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판정
- 최종 제품은 중국산으로 간주되어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적용 대상임

Case 07. 전기차 충전 케이블

사 례 명

- [전기차 충전 케이블] 원산지 표시,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37769(2024.02.02.)

사 실 관 계

요청자	Amphenol Optimize HPS(대리인 : Capin Vyborny LLC)	
제 품	제 품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명 : 전기차 충전 케이블(3종)• HVCO11002L5000(CCS1 LCC plug 계열)• HVCOSAEMACPF516NL1000(SAE AC plug 계열)• NACS T DC(NACS DC plug, LED 포함)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HVCO11002L5000, HVCOSAEMACPF516NL1000 : 절연 전기 케이블들을 하나의 외피로 감싼 형태, 한쪽 끝에는 차량용 커넥터가, 다른 쪽 끝은 단자화되지 않음. 커넥터에는 서미스터 센서(과열 방지용) 및 푸시 스위치(충전상태 감지용) 포함• NACS T DC : 구조는 유사하나 다른 전기차 모델용, 플러그에 LED 포함
	용 도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8544.42.9090
제 조 공 정	[상세 공정] 1. 미국산 절연 도체 케이블(8544.49)을 멕시코로 수입 2. 멕시코 내에서 케이블 절단, 피복 제거, 라벨 부착 3. 중국산 및 멕시코산 커넥터 부품을 양쪽 끝에 조립 4. 최종 제품은 시험 및 포장 후 미국 수출	

쟁 점 사 항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①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C.F.R.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나 재료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발생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단, NAFTA 또는 USMCA 물품에 대해서는 『19 C.F.R. §102』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원산지 표시 규정이 적용됨
 - 『19 C.F.R. §102.11(a)』에 따르면,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에 따름
 - 1)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그 국가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 2)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자국산 재료만으로 생산된 경우
 - 3) 해당 물품에 포함된 모든 외국산 재료가 『19 C.F.R. §102.20』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하고, 모든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해당 물품은 위의 1), 2)항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3)항을 적용해야 하며, 완제품의 HTSUS 8544.42의 세번변경기준은 ‘1)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2)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8544.11부터 8544.70까지로의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것(단순 조립 제외)’임
 - 미국산 케이블이 멕시코로 수입될 때 HTSUS 8544.49이므로, 위의 두 번째 세번변경기준을 적용, 비원산지 부품(non-originating parts)은 HTSUS 8544 외의 호에 분류되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함
- **(판정 결과)** 해당 제품은 관련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 표시 목적상 원산지는 멕시코로 판단됨

②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1940)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 2d 1201(Fed. Cir. 1993)

참고 판례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1908)

참고 판례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1982)

- **(판정 결과)** 미국산 도체 케이블은 완제품의 기능적 본질(essential character)을 형성하며, 커넥터 조립 등 추가 공정은 해당 케이블을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는 단순 공정에 해당하므로,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상 원산지는 미국으로 판단됨

결론

- 원산지 표시 목적상, 관련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원산지는 멕시코로 판정
- 최종 제품은 미국산으로 간주되어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적용 대상이 아님

Case 08. 이중 플랜지 휠 허브 어셈블리

사 례 명

- [이중 플랜지 휠 허브 어셈블리] 원산지 표시,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호

- NY N340514(2024.07.03.)

사 실 관 계

요청자	New Torch Technology Thailand Company Limited(대리인 : Autolin Inc.)	
제 품	제 품 명	이중 플랜지 휠 허브 어셈블리(부품번호 G3-350A)
	구 성	•내/외부 플랜지(태국) •내링(inner ring), 강구(steel balls), 씰링, 케이징, 기어링, ABS 센서, 볼트, 구리스, 포장재(중국)
	용 도	자동차의 조향 너클(steering knuckle), 허브(hub), 베어링 결합체를 대체하는 부품으로, 서스펜션, 브레이크 장치, 휠(hub)에 직접 연결되어 앞바퀴 회전에 기여하고 ABS 기능을 포함하는 핵심 부품(자동차 앞바퀴 구동계에 직접적으로 통합되어 회전 및 제동 제어를 지원)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8708.99.5800
제조 공정	[태국 상세 공정] 1. 내링 및 플랜지 : 정밀 연삭, 열처리, 정밀 가공 2. 조립 : 초음파 세척, 볼트 압입, 그리스 도포, 베어링 조립, 센서 부착, 테스트 등 3. 최종 제품에 레이저 마킹 및 방청 처리	

쟁 점 사 항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①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C.F.R.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1982)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참고 판례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Fed. Cir. 1983)(Uniroyal)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W968434*

참고 판례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1 CIT 470, 478, 664 F. Supp. 535, 541 (1987)

- **(판정 결과)** 플랜지 내 부품의 조립은 단순 조립에 해당하여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내링 및 플랜지는 태국 내에서 정밀 가공되어 최종 제품의 성격을 결정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태국임 (조립은 단순 작업으로 실질적 변형의 판단 요소가 아님)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562528(정밀 가공된 내·외링의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731968, HQ 731969(정밀 가공 공정의 중요성 강조)* 535, 541 (1987)

②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판정 결과)** 원산지가 중국이 아닌 태국이므로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 원산지 표시 목적상, 정밀 가공(레이스웨이 형성 등)이 이루어진 국가인 태국을 원산지로 판정
- 최종 제품은 태국산으로 간주되므로,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Case 09.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

사 례 명

-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 원산지 표시

사 례 번호

- NY N343543(2024.10.31.)

사 실 관 계

요청자	Hyundai Motor Company	
제 품	제 품 명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부품번호 39222-2S000)
	구 성	• 절연 처리된 전도선 케이블 다발(플라스틱 피복 처리) • 끝부분에 다양한 커넥터로 단자 처리됨
	용 도	자동차 엔진룸 내 냉각 시스템을 통해 전기 신호 전달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한국에서 절연 처리된 케이블 제조 2. 해당 전선을 중국으로 수출 - 절단: 테이핑하여 하네스 형태 구성 - 단자 끝부분 가공: 커넥터 및 단자 조립 3. 조립 완료된 하네스 한국으로 다시 수입: 최종 시험 및 포장 4. 미국으로 수출	

쟁 점 사 항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19 C.F.R. §134.1 (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1940)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참고 판례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1908)

참고 판례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1982)

- **(판정 결과)**
 - 한국산 케이블은 연결 및 전기 신호 전달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완성품인 하네스의 기능적 구성요소로서 그 특성을 결정짓는 요소로 판단됨
 - 중국에서 수행된 커넥터 부착 및 테이핑 등의 작업은 단순 조립에 해당하며, 이는 케이블에 새로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를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국에서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음

결 론

- 해당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부품번호 39222-2S000)의 원산지는 대한민국임

Case 10. 자동차용 전면유리

사 례 명

- [자동차용 전면유리] 원산지 표시,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호

- NY N343290(2024.11.04.)

사 실 관 계

요청자	Cristales Inastillables De México SA de CV(대리인 : Uni-Trade Brokers LC)	
제 품	제 품 명	자동차용 전면유리(Automotive Windshield) (부품번호 2000124977, Volkswagen ID Crozz SUV용 OEM 부품)
	구 성	• 평판 유리(flat glass) : 중국 • 접착제, 프라이머, 페인트 등 : 미국 • 기타 부속품 및 커넥터 등 : 멕시코 및 기타 국가
	용 도	폭스바겐 ID Crozz SUV 트럭용 순정 전면유리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중국산 평판 유리(flat glass)를 멕시코로 수입 2. 가열 및 성형 - 고온(634°C) 가열 → 380개 세라믹 롤러 통과 - 500°C 고리 프레스로 성형 → 450°C의 수형 금형 접촉 - 유리 2축 곡면 성형 → 진공 방식으로 리프팅 - Kevlar 천으로 유리와 금형 간 직접 접촉 방지 - 냉각 송풍기(60 psi, 팬 80% 작동)로 강도 및 형상 부여 3. 냉각 및 이송 : 냉각 컨베이어를 통해 유리 수동 또는 자동 하역 4. 후공정 : 라미네이션 및 센서, 브래킷, 핀 등 부품 조립 5. 최종 자동차 전면유리 완성 후 테스트 및 포장	

쟁점사항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①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C.F.R.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단, NAFTA 또는 USMCA 물품에 대해서는 『19 C.F.R. §102』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원산지 표시 규정이 적용됨
 - 『19 C.F.R. §102.11(a)』에 따르면,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에 따름
 - 1)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그 국가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 2)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자국산 재료만으로 생산된 경우
 - 3) 해당 물품에 포함된 모든 외국산 재료가 『19 C.F.R. §102.20』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하고, 모든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해당 물품은 위의 1), 2)항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3)항을 적용해야 하며, 해당 완제품의 HTSUS는 8708.22에 분류되며, 『19 C.F.R. §102.20』에 따른 이 세번의 세번변경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임(즉, 4단위 세번변경기준)
 - 제공된 자재명세서(BOM)에 따르면, 사용된 구성 부품 중 어떤 것도 HTSUS 상의 8708에 분류되지 않으므로 세번변경기준은 충족함
- **(판정 결과)** 해당 제품은 관련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원산지 표시 목적상 원산지는 멕시코로 판단됨

②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1 (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CBP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1940)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참고 판례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1908)
참고 판례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1982)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참고 판례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1982), *aff'd*, 702 F.2d 1022(Fed. Cir. 1983) (*Uniroyal*)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W968434*
참고 판례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1 CIT 470, 478, 664 F. Supp. 535, 541(1987)

- **(판정 결과)** 중국산 평판 유리는 멕시코에서 고온 가열, 성형, 냉각, 라미네이션 등의 복잡한 공정을 거쳐 자동차용 전면유리로 제조되며, 이는 기능과 용도가 완전히 변화한 것으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로 간주됨

결 론

- 원산지 표시 목적상, 관련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원산지는 멕시코로 판정
- 최종 제품은 멕시코로 간주되어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적용 대상이 아님

Case 11. 자동차용 PVC 바닥 매트

사 례 명

- [자동차용 PVC 매트] 원산지 표시

사 례 번 호

- NY N344712(2025.01.13.)

사 실 관 계

요청자	Thorx, SDN. BHD.(대리인 : JT Law Services, PC)	
제 품	제 품 명	•사출 바닥 매트(Injection Floor Mat, 부품번호 JD228ZZ-BK1-3P-ML) •비닐 바닥 매트(Vinyl Floor Mat, 부품번호 JD888YY-BK1-3P-ML)
	구 성	각 세트는 전면 2개, 후면 1개, 총 3개로 구성
	용 도	차량 내 바닥 보호용(차종 맞춤 설계)
	원 재 료 H T S U S	
	완 제 품 H T S U S	8708.29.5160
제 조 공 정	[상세 공정] •재질 : 폴리염화비닐(PVC) 100% •제조공정 : - 말레이시아산 PVC 펠릿 구입 - 오븐 가열 후 용융 → 용해기 투입 - 금형 사출성형을 통해 형상 및 패턴 제작 - 포장 및 라벨링 후 미국으로 수출	

쟁 점 사 항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U.S.C. §1304』 제정 목적에 대해 미국 법원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 물품에 표시된 내용을 통해 해당 물품이 어떤 국가의 생산품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표시가 구매 시점에 최종 구매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백한 입법 취지”라고 설명함

참고 판정 : *United States v. Friedlander & Co., 27 C.C.P.A. 297, 302(1940)*

- 『19 C.F.R.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판정 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두 종류의 매트는 PVC 성형, 금형 사출, 패턴 부여, 최종 포장 등 모든 제조 공정이 말레이시아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실질적 변형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 없이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말레이시아임

결 론

- 제조의 전 과정이 말레이시아에서 이루어졌으며, 실질적 변형 요건을 충족하므로 원산지는 말레이시아로 판단됨

Case 12. 자동차 시트 커버

사 례 명

- [자동차 시트 커버] 실질적 변형에 따른 원산지 판정

사 례 번호

- NY N345401 (2025.02.20.)

사 실 관 계

요청자	Thorx SDN. BHD	
제 품	제 품 명	범용 자동차 앞좌석용 시트 커버
	구 성	•스폰지 폼 (말레이시아산) •직물 또는 인조가죽 (중국산, 롤 형태로 수입됨)
	용 도	차량 앞좌석에 장착하여 오염, 마모로부터 보호하고 인테리어 미관 향상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8708.99.818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중국산 직물 또는 인조가죽을 롤 형태로 말레이시아로 수입 2. 말레이시아산 스폰지 폼과 함께 적층 (lamination) 공정 수행 3. 적층된 소재를 시트 커버 형상으로 재단 (cutting) 4. 재단된 부위를 봉제 (sewing) 하여 시트 커버 완성 5. 검사 및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쟁 점 사 항

- 실질적 변형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여부를 총체적 상황(totality of the evidence)에 근거하여 결정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1982)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CBP는 NY N344131 (2024.12.19.) 사례에서 원단이 적층 및 재단 작업을 거쳐 시트로 변형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바 있음

참고 판정 : *NY N344131 (2024.12.19.)*

- 캄보디아산 품과 중국산 원단을 원재료로 캄보디아에서 적층 공정을 거쳐 혼합
- 혼합된 소재를 재단하여 시트 커버 형태로 만든 후 검사 및 포장하여 미국으로 수출
- CBP는 적층 및 재단 공정을 통해 중국산 원단이 시트 커버라는 식별 가능한 제품으로 변형되었으므로, 캄보디아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미적용)

- **(판정 결과)** NY N344131 (2024.12.19.) 사례와 마찬가지로 본 사례에서 적층 및 재단 공정은 중국산 원단과 인조가죽을 식별 가능한 자동차 시트 커버로 변형시키므로, 말레이시아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

결론

- 말레이시아에서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정되며, 이에 따라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말레이시아임

Case 13. 연료 분사기 어셈블리

사 례 명

- [연료 분사기 어셈블리] 실질적 변형에 따른 원산지 판정

사 례 번호

- NY N346250(2025.03.13.)

사 실 관 계

요청자	Joinhands Injection System(Thailand) Co., Ltd.	
제 품	제 품 명	연료 분사기 어셈블리
	구 성	• 분사기 아마추어 및 파워 그룹 : 태국산 • 연료 레일 본체, 연료관, 인렛 압력링 : 태국산 • 밸브 시트, 스프링 등 기타 구성품 : 중국 및 일본산
	용 도	• 차량 연료 공급 시스템의 핵심 부품 • ECU 신호에 따라 연료 분사량과 분사 타이밍을 제어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태국 상세 공정] 1. 용접, 성형, 가공 등의 공정을 통해 분사기 아마추어 및 파워 그룹 생산 2. 완성된 분사기 아마추어와 파워 그룹 어셈블리를 중국산 밸브 시트 및 스프링과 조립하여 연료 분사기 생산 3. 플라스틱 소재를 가열, 성형, 탈형하여 연료 레일 본체 생산 4. 볼, 포켓, 하우징 등 기타 구성품을 조립하여 레귤레이터 생산 5. 상기 모든 부품을 조립하여 최종 연료 분사기 어셈블리 완성	

쟁 점 사 항

- 실질적 변형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참고 판정 : HQ H301619(2018.11.06.)

- CBP는 NY N344131 (2024.12.19.) 사례에서 원단이 적층 및 재단 작업을 거쳐 시트로 변형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바 있음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판정 결과)** CBP는 태국에서 수행된 공정이 충분히 복잡하고 의미 있는 수준이며, 이러한 공정을 통해 중국 및 일본산 개별 부품들이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 구성 요소가 되었으므로, 명칭, 성질 및 용도 면에서 새로운 제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했다고 판정함

결론

- 태국에서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정되며, 이에 따라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태국임

부 록

CBP 사전심사제도 신청 방법	52
CBP 사전심사 사례 조회 방법	55



CBP 사전심사제도 신청 방법



① CBP Advance Ruling 신청 홈페이지 접속

The screenshot shows the 'Electronic Ruling (eRuling) Template' page on the CBP website. At the top left is th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logo. Below it is the page title 'Electronic Ruling (eRuling) Template'. The main content area contains a welcome message and instructions for submitting an eRuling request. A 'Begin Application' button is visible. The footer includes navigation links for Travel, Trade, Border Security, Newsroom, About CBP, Careers, and Employee Resources. Social media icons for Facebook, Twitter, YouTube, LinkedIn, and Instagram are present, along with a 'Contact CBP' link. At the bottom, there is a section for 'CBP.gov' with links to Accessibility, Forms, Site Policies, Vulnerability Disclosure, Accountability, Inspector General, The White House, DHS Components, No FFAR Act, USA.gov, and FOIA. A 'National Terrorism Advisory System' (NTAS) logo is also displayed with the text 'NO CURRENT ADVISORIES'.

<http://erulings.cbp.gov>

② 신청인 정보 작성

Ruling Requester Information

* First Name **이름** Middle Name (or initial)

* Last Name **성** Title

* Company Name **회사명**

* Address 1 **주소** Address 2

* City **도시** * State **주 N/A선택** * Zip/Postal Code **우편번호** * Country **Korea, South**

* Phone **전화번호** * Email Address **Email 주소** * Retype Email Address **Email 주소 재입력 (확인)**

③ 결정 유형 선택

Request Type **결정 유형 선택** (품목분류, 원산지 표시, 원산지, FTA 적용)

* Select Request Type (check all that apply)

Please select at least one request type

Classification

Marking

Country of Origin

Application of Trade Program or Trade Agreement

④ 신청서 작성

Questions

Question 1 **대리인 제출 여부**

Is this request being filed on behalf of a client?

Yes No

If yes, please state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lient.

Client Company

Address 1 Address 2

City State Zip/Postal Code Country

Question 2 **미국 AEO 취득 기업 해당 여부**

Is your company a Trade Compliance Partner? (You must have a signed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CBPI). The following link provides further information on the Trade Compliance Partner program: <https://www.cbp.gov/document/faqs/ctpat-trade-compliance-program-faqs>

Yes No

If yes, please provide the Importer of Record Number.

Importer of Record Number

Question 3 **신청물품과 동일물품에 대한 CBP 또는 미국 법원의 쟁송 진행 여부**

To your knowledge are there any issues or requests for advice, concerning this commodity, pending before any CBP office or any Court?

Yes No

Explain the issue or advice request pending; state before which CBP office or Court it is pending, and what advice was rendered, if any. For example, have you received CBP forms 2B or 29 on the issue or item presented before this office?

Explanation

Question 4 **신청물품과 동일물품에 대한 CBP Ruling 신청 이력 여부**
Is this a resubmission of a previous ruling request which required additional information?

If yes, please provide the previous ruling number.

Previous Ruling #

Question 5 **신청물품에 대한 Sample 제출 여부**
Is a sample being submitted?

If yes, please provide the tracking number.

Tracking Number

If yes, would you like the sample to be returned?

If yes, please provide the return label.

Return Label

Question 6 **신청물품의 원산지**
If available, what is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imported product?

Country

⑤ 신청 상세사유 작성

Description **신청 상세사유 작성 (거래설명, 산업정보 포함)**

Text of Ruling Request (Include a description of the transaction; for example, a prospective importation of merchandise X from country A). For classification requests, include sufficient information to determine the classification, such as a full and complete description of the article, principal use, commercial or technical designation, relative quantity by weight of each component, illustrative literature, photographs, chemical analysis, flow charts, CAS number, and any other information that may assist in determining the classification. **Limit to 5 items or less of the same class or kind.**

* Overview of Issue / General Description

0/4000

WHEN SUBMITTING YOUR RULING REQUEST, PLEASE BE SURE TO INCLUDE THE SUGGESTED INFORMATION FOR YOUR RESPECTIVE COMMODITY PER INDUSTRY. CLICK VIEW INDUSTRIES (OPTIONAL) TO VIEW REQUIREMENTS.

⑥ 첨부자료 제출 (물품 설명자료)

Attachments **첨부자료 제출 (물품사진, 카달로그, 제조공정도 등 설명자료)**

NOTE: You can attach multiple files. The files sizes cannot add up to more than 25 MB.

Use the Attach button below to select and attach document files on your computer that support your ruling request. Acceptable file formats are: Microsoft Word (.doc, .docx), Microsoft Excel (.xls, .xlsx), Microsoft Power Point (.ppt, .pptx), Acrobat portable document format (.pdf), text file (.txt), JPEG image format (.jpg, .jpeg), GIF image format (.gif), Windows bitmap (.bmp), Portable Network Graphics (.png) and MP4 (.mp4).

To add attachment

1. Click on the Attach button below.
2. Browse to find the file(s) you want to attach.

Select the file(s), and then select Open to attach the files to your request.

If you have already added an attachment and decided to remove it, select the red discard button (X) next to the attachment name.

Or drop files

CBP 사전심사 사례 조회 방법



CBP CROSS (Customs Ruling Online Search System) 조회

- 검색(search)란에 품명 또는 세번 입력 후 조회

The screenshot displays th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website. At the top, the logo and text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curing America's Borders" are visible. Below this, the page title "CUSTOMS RULINGS ONLINE SEARCH SYSTEM (CROSS)" is shown. A search bar contains the text "품명 또는 세번 입력" (Product name or tariff number input). To the right of the search bar are links for "Home" and "Help".

About the Customs Rulings Online Search System (CROSS)

CROSS is a searchable database of CBP rulings that can be retrieved based on simple or complex search characteristics using keywords and Boolean operators. CROSS has the added functionality of CROSS referencing rulings from the initial search result set with their modified, revoked or referenced counterparts.

Rulings collections are separated into Headquarters and New York and span the years 1989 to present. Collections can be searched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For more information about features or how to use CROSS, please visit the [HELP](#) section.

What's New	Related Trade Information	Informational Note
CROSS was last updated Apr 17, 2025, 2:49 PM with 1 rulings, bringing the total number of searchable rulings to 216459. The most recent ruling is dated Apr 10, 2025.	Trade related links - Includes links to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Customs Bulletins, Informed Complianc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and more	Please be aware that not all rulings issued by HQ and NY since 1989 are yet included in the database. They are still being collected and we hope to have 100% inclusion as soon as practicable.
All Latest Rulings Includes NY and HQ rulings modified in the last 30 days. XML CSV	Customs Valuation Encyclopedia (1980-2021) - Download the Customs Valuation Encyclopedia (1980-2021) from the CBP web site.	Please submit any concerns related to CROSS to CBP website questions .
Latest NY Rulings Includes NY rulings 30 days or newer. XML CSV		
Latest HQ Rulings Includes HQ rulings 30 days or newer. XML CSV		

<http://rulings.cbp.gov/home>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쟁점과 사례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2편 자동차 부품

발행일	2025년 5월
발행처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총괄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박헌
집필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김태용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김수미, 배윤지, 배준석, 김가윤, 김지향 한국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 송경은, 권민경, 박현혁
디자인/인쇄	플러스원

관세청의 승인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쟁점과 사례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